

『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세구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관련 범죄 예방 시설물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자의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 제고(안 제4조)
- 나.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안심스크린 등 안전장치 설치 근거 마련
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0. 9. 1. ~ 9. 7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공중화장실의 ‘위생’과 ‘편의성’만을 고려하고 있는 현행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‘범죄예방’ 목적을 추가하고자 발의 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-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,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 안전 장치 설치 의무화를 지자체별로 권고했으나 여전히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조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, 소관부서에서는 유동인구, 남녀공용화장실 등 범죄 취약지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